



제 목 | 관리감독자의 범위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히 알고자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폐사는 아래와 같은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장운영팀 : 총무, 노무, 환경, 안전 등 생산활동 지원부서
- 구매팀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부서
- 품질기술팀 : 생산제품의 품질 관리, 생산 및 제품 품질향상 등의 기술개발 부서
- 기술연구소 : 생산제품과 전혀 다른 신제품 개발 연구부서
- 생산팀 : 제품 생산

2. 각 팀에는 팀장(총괄), 중간관리자(대리, 과장급), 반장(생산직 근로자를 직접 업무지시 및 관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생산활동의 지원부서인 품질기술팀, 기술연구소, 공장운영팀은 관리감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질의 2. 생산팀의 팀장, 과장, 반장 전원이 관리감독자 대상인지 또는 팀장만이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 3. 어느 한 프로젝트(생산)를 완성하기 위하여 생산직 근로자 중에 한시적으로(2~3개월) 반장으로 임명한 자도 관리감독자 대상인지요?

질의 4. 위험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은 관리감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기 질의를 한 시유는 교육시 팀의 관리자(팀장, 과장, 반장)가 전원 부재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여기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부서)”라 함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생산된 재화(효용을 가진 모든 물체와 물질)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생산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수불가결한 업무(부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부서의 명칭만으로는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어 관리감독자인지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업무내용이 있다면 관리감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품질기술팀, 기술연구소라 하더라도 기계기구, 유해물질 등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란 각 부서의 장이 아니라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모두를 지칭하므로 팀장, 과장, 반장 등이 근로자(인원 제한 없음)에게 작업지시 등을 수행한다면 모두 관리감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리감독자의 연간 16시간 반기 8시간이상 수료하여야 하는 관리감독자교육은 변론으로 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보면 매일 또는 작업 전 후 등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으로 볼 때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에는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직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험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 디지털카메라, 컴퓨터등의 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의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컴퓨터(노트북포함) 및 프린터기 등의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목 | 설비 변경시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여부

PSM사업장에서 설비를 개조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비 변경시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옹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나.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장고, 조명설비 등은 제외)

다. 플레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러나 동고시 제5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 목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내 교육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분류)

가. 정기교육

- 사무직종사자 : 매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종사자외 근로자 : 매월 2시간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자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 8시간 이상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 2시간 이상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영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자 : 16시간 이상
- 영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www.mol.go.kr) e-고객센터